

Muan Web Contents

2026년 03월 07일 10시 14분



목차

목차	2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3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3
기저귀 지원	3
조제분유 지원	3
신청 기한	3
신청 장소	3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3
신청서류	4
기본 첨부서류	4

미숙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다자녀 행복카드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기저귀 지원

■ 지원대상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다자녀(2인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 9만원) 바우처 지원

조제분유 지원

■ 지원대상 :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가 질병 ·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HIV), HTLV 감염 등)
아동복지시설 · 공동생활가정 · 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 · 조손)가정인 경우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지원내용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11만원) 바우처 지원

신청 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신청 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남악건강생활지원센터(남악, 오룡)

2025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147,000	112,371	37,001	113,324
3인	4,021,000	142,209	75,675	144,005

<http://www.muan.go.kr>

3인	4,021,000	143,230	13,013	144,203
4인	4,879,000	174,082	113,431	176,291
5인	5,687,000	201,632	134,274	204,525
6인	6,452,000	229,454	167,069	232,948
7인	7,191,000	256,716	202,363	261,360
8인	7,930,000	282,728	235,277	288,617
9인	8,669,000	311,031	269,976	320,322
10인	9,408,000	342,861	305,333	354,964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기존 발급받은 BC카드사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해당카드로 동 바우처 사용 가능

기본 첨부서류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2.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자료
- 예: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출산·육아 휴직시, 소속 직장에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
-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3.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4.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5.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 또는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을 증명하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이동복지시설 등 입소아동,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문의사항 있을 시 꼭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이 원칙입니다.

※ 문의 : 무안군보건소 건강증진팀(061-450-5030)

COPYRIGHT © MUAN-GUN. ALL RIGHTS RESERVED.

(<http://www.muan.go.kr>)

MUAN

Web Contents

 무안군